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란 1천억원을 말한다”를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 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1천억원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인 경우: 1천억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천억원

② 회사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를 “회계처리기준 및 공시기준 관련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회계처리기준에

관한”을 “제1항제1호 및 제2호 관련”으로 한다.

2. 회계처리기준 해석

3. 회계처리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

제9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다. 금융회사

4. 직전 사업연도말의 종업원이 6명 미만인 회사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1천억원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1천억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

로 5천억원

제3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고자등의 인적사항(다만, 내부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행위를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 이후에 제출할 수 있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자등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감면(減免)할 수 있다.

1. 신고자등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

가. 신고자등이 신고하거나 고지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나.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인이나 감사가 신고자등이 신고하거나 고지한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고하거나 고지하였을 것

다.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지하였으며, 그 위반행위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2. 신고자등이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감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대형비상장주식회사)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억원을 말한다.	제4조(대형비상장주식회사) ① -----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 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1천억원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인 경우: 1천억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천억원
<신 설>	② 회사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7조(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	제7조(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① ----- ----- ----- ----- -----

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
에 위탁한다.

1. (생략)

2.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신설>

3.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과 관련
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②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계처리기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 ⑦ (생략)

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
를 말한다.

1. 2. (생략)

<신설>

-----.

1. (현행과 같음)

2. 회계처리기준 해석

3. 회계처리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

4. ----- 회계처리기준 및 공
시기준 관련하여 증권선물위
원회-----

② ----- 제1항제1호
및 제2호 관련 -----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
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신 설>

3. (생 략)

② ~ ⑩ (생 략)

제15조(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①·② (생 략)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
로 1천억원을 말한다.

이 5천억원 미만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지 않는 회사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
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
출대상법인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
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
단 소속회사

다. 금융회사

4. 직전 사업연도말의 종업원이
6명 미만인 회사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15조(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

1. 신고자등의 인적사항(다만, 내부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행위를 위반행위로 의결한

2. ~ 4. (생략)

③ ~ ⑦ (생략)

제32조(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신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 제28조제1항에 따
라 신고자등에 대한 법 제29조
에 따른 조치를 감면(減免)할
수 있다.

1. 신고자등이 신고하거나 고지
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관련자
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날 이후에 제출할 수 있다)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2조(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
8조제1항에 따라 신고자등에 대
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법 제29
조에 따른 조치를 감면(減免)할
수 있다.

1. 신고자등이 다음 각 목의 요
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 제29
조에 따른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

가. 신고자등이 신고하거나
고지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나.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인
이나 감사가 신고자등이
신고하거나 고지한 위반행
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
지 아니하였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2. <u>증권선물위원회, 감사인이나 감사가 신고자등이 신고하거나 고지한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고하거나 고지하였을 것</u> 3. <u>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지하였으며, 그 위반행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u>	<u>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고하거나 고지하였을 것</u> 다. <u>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지하였으며, 그 위반행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u> 2. <u>신고자등이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감경</u> <u><삭 제></u>
--	--